

인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단2142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호선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변론 종결 2021. 5. 7.

판결 선고 2021.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7. 2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57,560,7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7,560,79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C로 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57,560,7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56734)를 제기하여 2019. 12. 1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5.경부터 계속하여 C와 거래관계에 있었고,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2019. 7. 25.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C는 2019. 8. 6.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D는 같은 날 피고에게 91,221,73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C는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 적극재산으로 91,221,735원 상당의 이 사건 채권,시가 718,25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조세채무 합계 1,452,633,000원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는 2019. 5.경부터 C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상당한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C는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 이 사건 채권과 부동산 이외에도 1,071,196,957원상당의 재고자산, 750,006,175원 상당의 미수금채권, 20,651,000원 상당의 동산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설령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 당시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와 장기간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미수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2019. 7. 25.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114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일인 2019. 7. 25. 무렵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채권 양도일무렵 아래 표 연체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452,633,000원 상당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기관명	등록일자	등록금액	연체금액	변제액	해제일
E 카드	2019-10-28	₩11,485,000	₩11,485,000		미해제
국세청(구로세무소)	2019-08-01	₩50,000,000	₩0	₩50,000,000	2020-07-05
국세청(부천세무소)	2019-08-01	₩482,000	₩0	₩482,000	2020-07-05
경기도(부천시청)	2019-12-27	₩7,208,000	₩7,208,000		미해제
기업은행(남구로지점)	2019-11-04	₩45,222,000	₩36,221,000	₩9,001,000	미해제
신용보증기금 영등포재기지원단	2019-10-29	₩487,414,000	₩484,321,000	₩3,093,000	미해제
신용보증기금 영등포재기지원단	2019-10-29	₩765,374,000	₩765,374,000		미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본)	2019-11-14	₩133,120,000	₩16,640,000	₩116,480,000	미해제
F 은행 서울여신관리센터	2019-11-18	₩24,300,000	₩24,300,000		미해제
F 은행 서울여신관리센터	2019-10-30	₩225,000,000	₩29,474,000	₩195,526,000	미해제
기업은행(남구로지점)	2019-11-22	₩330,000,000	₩49,500,000	₩280,500,000	미해제
G 은행(여신관리부)	2019-11-07	₩28,110,000	₩28,110,000		미해제
		₩2,107,715,000	₩1,452,633,000	₩655,082,000	미해제

2) 한편 C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91,221,735원 상당의 이 사건 채권, 시가 718,25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일 무렵 1,071,196,957원상당의 재고자산, 750,006,175원 상당의 매출채권, 10,651,000원 상당의 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1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